

법령·제도개선 건의사항 목록

푸른도시여가국

총 1건 건의

목 록

연 번	건의제목	건의부서
1	도시공원 국유지 무상 사용 근거 마련	공원조성과

법령 · 제도개선 건의사항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<p>1. 도시공원 국유지 무상 사용 근거 마련 (공원조성과, '23. 8. 2.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원관리청이 국유지를 활용하여 공원을 조성(경의선 숲길)했으나,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('11.4.1.)으로 최장 1년만 국유지 사용료 면제 <p>※ 사용료 연 80억원 이상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원은 개방된 형태로 지자체가 점유·사용하는 것이 아니라, 국내외 관광객 모두가 즐기는 여가 및 휴양 공간으로 무상 사용 필요 ○ 지자체가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국유지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면제 필요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건의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유지상 도시공원에 대한 국유지 사용료 부과 면제 건의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관련 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44조 	<p>(국토교통부)</p>

<붙임>

신·구조문대비표

<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>

현행	개선(안)
제44조(비용보조) ① ~ ③ (생략) <u><신설></u>	제44조(비용보조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공원관리청이 관할 구역 내 국유지를 활용하여 도시공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, 국가는 「국유재산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, 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면제한다.</u>